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
檢 討 報 告

감토자 : 송부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진

1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2. 提 出 日 字 : 1997. 6. 17

3. 提 案 理 由

-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 조정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4. 主 要 骨 子

- 정원의 총수중 시분청 정원 '409명'을 '410명'으로 시임소 정원 '68명'을 '67명'으로, 읍·면·동의 정원 '349명'을 '350명'으로 함 (안 제2조).

5. 檢 討 意 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,
- 충청남도 행정 12200-633('97. 3. 28)호에 의거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.